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추가 〉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인근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근거 마련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8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0798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등)	2
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인근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근거 마련(안 제19조제 14항 신설)	8
※ 참고자료	12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0798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주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공공·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 추가(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주거지역 및 그 인접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차
환경개선지구의 대상 지역에 상업지역 및 그 인접지역을 추가하려는 것
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현행	개정안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③ (생략)	<u>상업지역</u>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 및 <u>상업지역</u>---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로 낮은 주거지역(인접지역 포함)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공급 확대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참고1·참고2·참고3 참조)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고 방문 차량이 많은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현행 주거지역뿐 아니라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1)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주차장 공급이 확대되면 상업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주거지역의 주차장 공급은 해당 주소지 등록 차량의 차고지 공급에 관한 문제로서 현행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거지역에 주차장 공급을 늘림으로써 차고지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제도임²⁾.

반면, 상업지역의 주차장은 차고지보다는 유동 차량의 일시적 주차 장소의 성격이 크므로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 정책뿐 아니라 수요조절 정책³⁾도 병행할 필요가 있고, 주차장 공급 확대에 관해서는 교통량 증가를 유발함에 따른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부작용, 그와 반대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공공재정 투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종합적 대책이 요구됨.

한편, 지자체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없이도 「도시교통정비 촉

2) 지자체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례를 보면, 주차장확보율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아래 예시).(참고3. 참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82호) 중
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가. 2016년 주차실태조사시까지 주차장확보율이 60%이상인 구역(No. 118구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70%이상으로 개선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
나. 2016년 주차실태조사시까지 주차장확보율이 50%이하인 구역(No. 88구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50%이상까지 개선

3) 예를 들어, 고가 주차요금이나 주차시간 제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중기계획·연차별 시행계획⁴⁾이나 교통영향평가⁵⁾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⁶⁾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공공 또는 민간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음.

종합하면,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통·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공급 및 주차수요 조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주차장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상업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상업지역의 주차난이나 교통난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장(교통영향평가)

6)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역 주차난 문제가 더 시급하고, 상업지역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나 토지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상업지역은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신중한 입장이 많다는 점과 상업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결이 우선 필요하며(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상업지역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서울시, 대구시, 안양시), 상업지역은 주차장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성남시, 청주시),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없이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주차여건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함(강릉시).

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인근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4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근 공공·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⑬ (생략) <u><신설></u> ⑭ ~ ⑰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난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동주택 인근의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⑮ ~ ⑰ (현행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9조⁷⁾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정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7)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6>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⁸⁾ 일부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개방하고, 그에 소요되는 주차장 관리 비용 등을 보조하는 제도로써,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생책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건립 당시 기준의 주차 수용력에 비하여 입주자 보유 차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까지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등 지역 교통환경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차난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근

8)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거한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방주차장은 특정 이용자에게 한정하여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개방되는 주차장이므로 공동주택 인근에 개방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초과 주차 수요를 흡수할 만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 시 행정청에 그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시설물 중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법률로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2022년 3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보유차량이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초과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가 인근의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해 인근 건축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낮으며, 입주자-지자체-인근 건축물 소유자 간 갈등 발생 및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일반의 이용’이 아닌 일부 공동주택 주차 수요를 위해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개방주차장 도입 취지와 배치되며,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수원시

개방주차장의 설치 목적인 ‘일반의 이용’이 아닌 일부 공동주택의 주차 수요를 위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며, 공동주택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용도의 건축물들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24.12월 기준)

구분	지정 개소	지정 면적(m ²)
서울특별시	35개 구역	8,224,236
부산광역시	82개 구역	14,117,229
경 기 도 (포천)	16개 구역	1,894,592
합계	133개 구역	24,236,057

* 이외 지자체는 지정 없음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 2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조례 규정 사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3. <삭제 2017.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2. 상업지역
3. 전통시장 등

③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16

제1581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82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및 해제 고시

주차장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해제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계획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지구지정 구역

- 가. 제30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8번지 일대
- 나. 제88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 다. 제89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 라. 제110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암동 697번지 일대
- 마. 제118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07번지 일대

2. 지구지정 필요성 :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및 주택가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및 대규모 건축물이 없고 향후 주차난 해소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

3. 지구해제 구역

- 가. 제40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55-95번지 일대
- 나. 제62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10번지 일대
- 다. 제100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암동 325-2번지 일대
- 라. 제103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67번지 일대
- 마. 제109구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용암동 714번지 일대

4. 지구해제 사유 : 공영주차장 건축, 신축건물 증가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0%이상으로 향상되어 주차환경이 개선된 지역

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가. 2016년 주차실태조사시까지 주차장확보율이 60%이상인 구역(No. 118구역)의 주차장확보율을 70%이상으로 개선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

나. 2016년 주차실태조사시까지 주차장확보율이 50%이하인 구역(No.88구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50%까지 개선

6.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구분	총 주차면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자료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주차대수		과부족		주차장 확보율		자동차 등록대수	과부족	주차장 확보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전체	144,874	99,908	137,851	44,966	7,023	145.0%	105.1%	123,096	21,778	117.7%

7.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	주차장총면수	노상주차장 면수	노외주차장 면수	부설주차장 면수	주차장 확보율(%)
2009년	110,712	95,998	5,191	2,546	88,261	86.7
2010년	116,001	106,759	5,084	2,794	98,881	92.0
2011년	116,505	124,040	5,340	3,167	115,533	106.5
2012년	121,614	134,913	5,240	3,155	127,049	113.7
2013년	123,096	144,874	4,699	3,263	136,912	117.7

※ 은평구 자동차등록대수는 연평균증가율 1.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주차 면수는 연평균 7.3%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8.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사 업 명	소 요 예 산(구)	비 고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15,000천원	사비와 구비 5:5지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유휴부지 · 내대지등)	15,000천원	사비와 구비 6:4지원
주택가 골목길 담장허물기 시설비	207,000천원	사비와 구비 6:4지원
민간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	20,000천원	전액 구비

9.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확보방안

- 가. 자투리땅유희지나대지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나. 주택가 골목길 담장허물기 적극 추진
- 다.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 강화
- 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강화
- 바. 민간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지원

10. 지정지역 위치도 : 붙임 참조

11. 관계도면은 은평구 교통지도과(☎351-78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환경개선폰지구 지정지역 위치도

